# 「평창군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8.21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3. 9. 10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3. 9. 10(화)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)

가. 상위법 법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【법률제4746호(1994. 3. 24) 도서관및독서진흥법

- ⇒ 법률제8029호(2006. 10. 4) 도서관법】
- 나. 봉평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평창군립도서관에 봉평도서관을 추가 등재하고자 함.

#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○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『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』2006년 10월 4일 『도서관법』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법령제명을 수정하고 봉평도서관이 2013년 3월 20일 개관함에 따라 현행 대화,진부 로 되어 있는 평창군립도서관에 봉평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립 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부속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,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도서관자료"(이하 "자료"라 한다)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 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(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2. "시설사용료"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 거나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3. "문화강좌 수수료"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란 도서관의 문화교실 강좌에 등록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
- 제3조(위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평창군립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
- 제4조(사용허가) ① 도서관 시설(부속시설을 포함한다)의 사용,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도서관업무담당(이하 "담당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.
  -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전시실과 시청각실을 말하며,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.
  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- 2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  - 3.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- 제5조(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)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. 다만, 공공기관이나 문화원, 공익법인체 등에서 시행하는 교양및 정서함양을 위한 강좌 등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또는 도서 관 직원상조회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) ① 도서관업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되었을 때
- 2.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
- 3. 사용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4.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- ② 도서관업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- 1.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- 2.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
- 제7조(사용자 변상책임) 사용승인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 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도서관업무담당의 허가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·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을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 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(법인)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점, 식당, 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

청을 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지원)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제11조(사업계획서) 수탁자는 매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운용계획
  - 2. 세부사업집행 계획
- 제12조(예산 및 지출) ① 수탁자는 사업 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일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수탁자는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제13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 정보화,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·공유재산을 도서관의 운영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군수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감독)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,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15조(위탁의 철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  - 1.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하였을 때
  -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
  - 3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4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- 제16조(입관의 제한) 도서관업무담당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- 제17조(변상)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,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- ② 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.
- 제18조(대출) 도서관업무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 제19조(위탁자료)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 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업무담당의 승인을 받은

후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.
- 제20조(기증자료 관리)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 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시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

- 은 다음과 같다.
- 1.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・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
- 2. 자료 이용자의 편의
- 3.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
- 4.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
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이용가치의 상실
- 2. 자료의 훼손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분실
-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 내로 하되, 해당 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분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2조(문화시설의 협력)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·문예 회관·박물관·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문화활동의 전개) 도서관업무담당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24조(위원회 설치)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운 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문화계·교육계 전문인사를

포함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